**‘꼬마마녀의 무모한 모험’ 공동 개발 계약서**

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, 2004-5(가산동,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)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매니아마인드(이하 “을”)와 서울시(xx동)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민(주민번호),김희태(주민번호),최태섭(주민번호)(이하 “갑”) 간의 인디 게임 프로젝트 “꼬마 마녀의 무모한 모험”(가제, 이하 “프로젝트”)의 공동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**제1조 (프로젝트에서의 역할)**

1. “을”은 “갑”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획서와 그래픽 리소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2.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공하는 기획서와 그래픽 리소스를 바탕으로 “프로젝트”의 프로그램 파트의 구현을 담당한다.
3. “갑”은 “을”이 요구하는 요청서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
**제2조 (매출분배)**

1. “을”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순 매출의 30%를 “갑”에게 지급한다.
2. 지급방법: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하는 계좌로 3개월에 1회씩 현금 이체한다.
3. 3개월간 누적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는 상호 상의 후 지급 여부를 조절한다.
4. “갑”의 계좌는 다음으로 한다.
5. 예금주: / 계좌번호: / 은행명:

**제3조 (소유권)**

1. “프로젝트”의 결과물인 실행파일, 소스코드, 그래픽 리소스를 포함한 저작물 일체의 권리는 “을”이 소유한다.
2. “프로젝트”의 IP는 “을”이 소유한다.

**제4조 (서비스 등록 및 유지보수)**

1. “갑”은 본 계약의 목적인 “프로젝트”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서비스 기간 동안 부담하기로 한다.
2. “을”은 “프로젝트”가 서비스 되는 동안 등록 및 패치를 담당한다.

**제5조 (계약의 해지)**

1. “갑”과 “을”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2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1.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이행지체를 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2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이행지체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3. 계약해지의 효력은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 표시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**제6조 (분쟁해결)**

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의 발생 시 당사자 간에 원만한 대화로 우선 해결하기로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시 일차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다.
2. 제1항의 조정에 실패할 경우 “갑”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의한 관할로 분쟁을 해결한다.